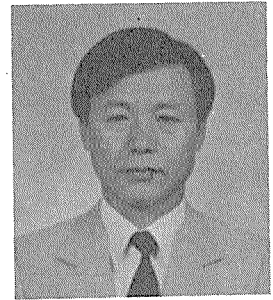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도입과 기업의 대응(II)



특허청 조사과장 / 황 의 창

목 차

1. 머리말
2. 영업비밀의 정의
3. 영업비밀 보호의 필요성
4. 외국의 입법예와 우리의 입법추진
5. 어떤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가?
6.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떤 구제 수단이 있는가?
7. 기업은 영업비밀 보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8. 맺는 말

5. 어떤 경우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특수한 형태인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보고 6가지로 유형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기본적인 침해행위 유형은 다음 2가지이다.

① 절도, 사기, 협박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입법초안 제11조 제1항 제1호, 부정취득 행위 등)

② 계약관계 고용관계, 라이선스 계약 등 영

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입법초안 제11조 제1항 제4호,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

이상 2가지의 기본적인 침해행위 유형에 따르는 사후적 관여행위를 각각 2가지씩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부정취득 행위(제1호)와 비밀유지의무 위반 행위(제4호)를 취득 당시에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로 각각 제2호, 제5호에 규정하고 있으며 부정취득 행위(제1호)와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제4호)를 취득 당시에는 알지 못하였으나 취득후 알게 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당해 영업비밀로 사용 또는 공개하는 행위를 각각 제3호, 제6호에 규정하고 있다. (부록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초안 전자진흥 8호 참조)

6.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떤 구제수단이 있는가?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의 구제수단으로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구제수단인 손

해배상 청구권외에 침해행위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영업비밀로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 제거 청구권,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청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어 기업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업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7. 기업은 영업비밀보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입법이 될 경우, 일단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확실한 법적구제수단이 마련된 셈이다. 그러나 입법이 된다 해서 기업의 영업비밀이 자동적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고 기업 스스로가 자기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과 제반 조치를 강구하여 관리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 법은 영업비밀의 유지, 관리의 의무와 책임을 당해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보유자는 기업의 특성에 맞는 취업규칙이나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을 만들어 사내에서의 비밀누설을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대책은 물론 타사 즉 외부로부터의 영업비밀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어대책도 아울러 마련하여 영업비밀 정보의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인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취업규칙 등의 제정, 시행

기업의 임·직원의 신분으로 준수해야할 취업규칙이나 고용규칙 등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신규사원 채용시 이를 숙지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서약서 등을 청구하는 등의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가. 영업비밀의 누설방지

자기의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영업비밀은 물론 기업체로부터 받은 특별과제의 수

행과정에서 얻어진 영업비밀이나 자기업무와는 무관하나 전문, 자료 등의 정보에 의하여 알게 된 영업비밀에 대하여서도 재직시는 물론 퇴직시에도 무단누설하거나 경쟁기업체에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규칙을 만들어 이의 이행을 채용시 고용계약 등으로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쟁업종에의 전직제한

기업체의 임·직원이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정보와 관련된 분야의 경쟁업종에 전직을 하고자할 경우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전직을 제한 할 수 있는 경업피지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규칙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다. 경쟁적 창업행위(경쟁기업과의 동업) 금지

기업체 임·직원이 재직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영업비밀보유 업체보다 우위의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적 창업행위 즉 경쟁기업과의 동업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경우 기업의 임·직원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규칙은 사회질서(사회상규, 공서양속 등)에 반하는 것으로 민법 제103조, 제104조의 법리에 따라 당연무효가 됨으로 과당하게 종업원의 기본권을 규제하는 규칙을 만들어 직업선택의 자유나 노동의 권리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2) 기술도입 계약 취급규정의 제정, 시행

기술도입계약의 대상범위, 도입기술의 수준, 기술도입료액, 계약기간, 계약기간 만료후의 제반 처리사항 등 기술도입에 필요한 기본적인 준하여 준칙사항 등을 규정화하여 이에 준하여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계약기간을 너무 길게 잡는다면 계약기간 만료까지 계속 영업비밀 유지를 의무화 한다면, 계약범위를 턱없이 넓힌다면, 개량된 발명, 고안까지도 도입기술의 범주로 인정한다면, 계약기간 만료후 특별한 사유

없이도 체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로얄티 지급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등의 규정을 두어 무모하게 손해를 입거나 부당한 이익을 보게되는 폐단이 없도록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할 것이다.

3) 영업비밀의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 운영

영업비밀은 기업에 신고하여 기업의 영업비밀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비밀 신고제를 두어 운영한다.

신고된 영업비밀을 가칭 영업비밀 관리위원회 같은 기구를 두어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업비밀 관리기록부에 올리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도 아울러 마련하여 영업비밀보호제도의 활발한 운영을 도모한다.

4) 영업비밀 관리규정의 제정, 시행

사업활동에 모든 인원, 부서, 자재시설, 통신, 장소 등을 경쟁기업 또는 비밀취급 비인가자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만반에 예방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즉, 각 기업은 영업비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한 영업비밀 관리규정을 만들어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가. 영업비밀 관리체계의 확립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관리체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내에 영업비밀관리업무 총괄부서(총무과, 서무과, 관리과 등)를 두는 한편 가칭 “영업비밀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관장토록 한다.

- 영업비밀 관리제도의 연구, 발전
- 영업비밀 대상업무 및 그 분류기준의 설정
- 영업비밀정보의 보존기간 및 그 보존 방법
- 영업비밀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감독 및 통제 기타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 영업비밀 유출 등 사건 발생시의 대책 마련 등

나. 영업비밀의 관리방법

영업비밀 관리는 중앙집중관리 또는 부, 과, 계단위의 분산관리 등의 방법이 있으나 영업비밀 정보의 이용면에서 보면 분산관리 방법이 편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영업비밀 취급자 등 인가

영업비밀보호의 책임과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영업비밀 취급자와 책임자를 지정, 인가한다.

영업비밀 취급자, 책임자는 그 영업비밀 정보를 직접관리하는 부서의 담당자와 직상급자로 하는 등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영업비밀 정보의 보호, 관리면에서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라. 영업비밀 내용의 구분 및 등급의 결정
영업비밀의 내용이나 중요도에 따라 I급, II급, III급 및 대외비 등 비밀성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보안의 질을 강화하되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등급으로 분류하고 과대하게 분류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마. 영업비밀의 보존년한 설정

영업비밀은 그 활용가치의 정도에 따라 보존기간을 1년, 2년, 3년, 5년, 7년, 10년 등으로 설정할 수 있으나 그 보존기간은 최단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지나치게 길게 잡아서서는 안될 것이다.

바. 영업비밀의 보관용기

영업비밀의 보관용기는 휴대하기 어렵고 무게가 있는 금고 또는 2중 철제캐비닛으로 하고 반드시 2중 자물쇠 장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보관용기의 표지는 외부에 비밀의 보관을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도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사. 영업비밀 보관 장소의 설정

영업비밀의 안전적 보관을 위하여 보관장소를 설정하여 외부출입자는 물론 사내 관계자의 접근도 통제 하여야 할 것이다. 보관장소의 선정은 사무실의 위치, 보관함, 캐비닛, 금고 등에 유의하여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 영업비밀 관리기록부의 비치

영업비밀 관리기록부를 비치하여 영업비밀의 분실, 훼손, 거래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 출납

을 그때 그때 기록하여 영업비밀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자. 통신보안

○음어의 보안

전연통신 기타 통신수단에 의하여 수령한 음어문은 이를 평문화하여 비밀문서인 경우에는 영업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통신문의 보안

국제통신문은 비밀의 분류기준을 국내에서 적용하는 것보다 상향분류할 필요가 있다.

텔레텍스, 국제전화 및 팩시밀리 등을 사용할 시에는 보완통제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그 정보자료가 영업비밀에 속할 경우에는 영업비밀관리 기록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차. 시설 보안

○보호구역의 설정

비밀의 보호와 중요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설정한다. 보호구역은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등으로 구분하되 제한구역과 통제구역의 설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비인가자 또는 부외자가 업무상 출입이 빈번한 구역의 설정을 피하여야 한다.

○보호구역의 출입자 통제

통제구역에는 관계자외의 출입을 통제하고 통제구역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카. 영업비밀 관계자 이외의 자에 대한 관리

○관련기관 등에 대한 보안

관계기관 단체, 용역회사, 하청업체 등에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정보자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영업비밀 표시는 물론, 담당자의 영업비밀 준수 동의서에 서명토록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 두면 유사시 법적효과 이외에도 심리적으로 비밀관리의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외래방문객에 대한 보안

기업에 업무상 또는 홍보상 외래객이나 시찰단이 자주 방문하게 된다. 이 중에는 경쟁기업체의 비밀탐지 의무를 띠고 온자도 있을 수 있

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이들로 하여금 비밀정보가 새어 영업비밀이 유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래 방문객에 대한 주의도 요망 된다 할 것이다.

○사내 비밀취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보안
사내에서 통상 영업비밀 업무와 무관한 직에 있는자로 부터 영업비밀에 관한 복사, 복제, 열람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요구가 있을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비밀준수 각서 등을 징구하여 보관하는 등 비밀관리에 필요한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 영업비밀관리에 관한 교육

신입사원은 물론 재직자에게도 영업비밀 관리규정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영업비밀에 관한 관리방법을 철저히 주지시킴은 물론 퇴직후에도 악의성 누설을 하여서는 않된다는 기본 인식을 갖도록 보안의 생활화를 몸에 익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파. 영업비밀 관리상태의 점검

영업비밀 관리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이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 비밀 정보의 누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하. 영업비밀 유출 등 사고에 대한 조치

영업비밀의 누설, 비밀정보자료의 분실 보호 시설 및 장비의 파괴, 보호구역내의 불법침입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영업비밀관리 책임자, 영업비밀 관리업무 총괄부서 및 영업비밀 관리위원회 등에 즉시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사내조치는 물론 변호사 등에 의한 법적 구제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몇가지 대응책을 제시해 보았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에 불과할 뿐이므로 각 기업은 기업마다의 특성에 알맞는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제반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거니와 각사 특성에 맞는 법적 정보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취업규칙, 기술도입계약취급규정, 사내영업비밀의 신고제 및 보상제,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의 기본방침을 정해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 수단

으로서의 사원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은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예컨대 퇴직자의 경업제한 계약에 대해서는 경업의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은지의 여부를 제한의 기간이나, 장소적 범위, 제한대상이 되는 직종의 범위, 대가의 유무 등에 대해서 채권자의 이익, 채무자의 불이익 및 사회적 이익(독점, 과점, 이에 따른 소비자의 이해 등) 등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인바 비교형량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8. 맺는말

최근 기술혁신의 현저한 진전, 경제사회의 정보화 등으로 인하여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어가고 있는 산업기술이나 판매전략 등 사업활동에 유용한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에 대하여 외국 제도와의 조화를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 등 영업비밀에 관한 부정경쟁행위에 대하여 금지 및 예방청구 등을 할 수 있는 제도를 확립해야 하는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 법은 영업비밀에 관한 기본적인 틀만을 정하고 그 운용은 기업에서 직접하게 되는 특수한 법이므로 앞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나 기업에 종사하는 분 즉, 산업계, 노동계 할 것 없이 이 법 운용에 실제로 직면할 모든 분야의 종사원이 모두 비교적 익숙하지 못한 영업비밀의 법적개념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법안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확실히 이해하여 입법취지에 벗어난 권리 주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사의 영업비밀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어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타사로부터 영업비밀 침해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소극적인 방어전략도 아울러 수립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각 기업은 기업특성에 맞는 법적 정보관리의 구체적 방법을 설정하기 위하여 고용계약 등에 관한 취업규칙, 기술도입취급규정, 사내 영업비밀 신고제 및 보상제의 도입, 운영, 기타 비밀분류 등의 기본방침 등을 정한 영업비밀 관리규정 등을 만들어 운용해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 수단으로서의 사원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은 사회질서(공서양속)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로 제한 함으로써 영업비밀 보유자의 권리남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려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 점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 내지 판례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부는 물론 학계, 법조계, 산업계의 협조가 크게 필요할 것이다.

